[부산대학교 특수대학원 수료자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한 지침]

제정 2020. 1. 20. 개정 2020. 8. 6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부산대학교 학칙 (이하 '학칙'이라 함) 제48조 제6항 및 제72조 제3항에 따라 학위논문 미제출로 특수대학원을 기 수료한 자가 수료 후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에 등록하여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위를 취득하는데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.

제2조(정의)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

1. "무논문 학위취득"이란 학위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학점 취득 등의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 대상) 수료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등록 할 수 있다.

- 1. 특수대학원 수료일과 등록 신청일 기준으로 수료 후 2년이 경과되었을 경우다만, 각 특수대학원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.
- 2. 신청일 기준 등록하고자 하는 학과(전공)에서 무논문 학위제를 시행 중인 경우
- 제4조(신청 절차) ① 수료자가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서(제1호 서식)을 제출하여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학위취득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.
 - ② 각 특수대학원장은 학기 개시 30일전까지 신청자 명단(제2호 서식)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5조(등록) ① 수료자는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등록하여야 한다. ② 전항의 등록금액은 당해 학기 해당 학과 재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으로 하되, 수강 신청 학점이 0학점내지 3학점 이하인 경우 동 금액의 1/2을 차등하여 납부한다. 다만 차등 납부는 등록 후 첫째 학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.
 - ③ 등록을 포기할 경우 등록포기서(제3호 서식)를 제출하여야 하며, 포기자의 등록금 환불은 부산대학교 학사운영규정 등록금 반환규정에 의한다.(10원 미만 금액은 절사한다)

- **제6조(교과목 이수)** ①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해 필요한 기준 학점은 각 아래와 같다. 다만, 특수대학원 사정에 따라 추가 이수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 - 1. 전공(공통기초) 6학점
 - 2. 특수연구 0학점
 - ② 수료 전 이수한 과목과 동일한 과목 또는 동일한 과목으로 인정받은 과목은 재이수할 수 없다. 단,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해 수료 후 이수한 과목에 대하여는 학칙 제60조 제3항에 따라 C+ 이하인 경우 재이수 가능하며 재이수에 따른 취득 성적은 제한하지 않는다.
 - ③ 매학기 수강신청은 6학점 이내로 한다. 다만 특수대학원 추가 이수학점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.
 - ④ 학기 이수 중 질병으로 수학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학연기 신청(제 4호 서식)을 할 수 있다.
- 제7조(성적 인정)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과목의 성적은 수료 전의 성적과 별도로 산출하여 처리하며 석차는 산출하지 않는다.
- 제8조(수업연한, 재학연한)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해 등록한 자에 대해서는 학칙 제36조 (수업연한) 및 학칙 제37조(재학연한)의 적용에서 예외로 한다.
- 제9조(학적부 기재) 무논문 학위취득 재등록자의 학적부 기재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
 - 1. 무논문 학위취득 수료자 등록 학기 : 0000학년도 제 0학기
 - 2. 추가 이수 학기 : 0000학년도 제 0학기
- 제10조(학위 수여요건) 무논문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.
 - 1. 제6조에서 정한 이수 학점
 - 2. 등록 후 취득한 교과목의 평점평균 3.0 이상
- 제11조(학위 수여) 제10조의 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하고,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 혹은 보고서 등을 통과한 자에게는 해당 특수대학원위원회의 학위수여 결정을 받아 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.

- 제12조(증명 발급) 무논문 학위취득자 및 무논문 학위취득 과정 이수중인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. 단, 무논문 학위취득 과정 이수중인 자에게 재학증명서는 발급할 수 없다.
 - 1. 수료 증명서
 - 2. 학위 증명서 : 제11조에 따른 무논문 학위 취득자
 - 3. 성적 증명서 : 제7조에 따라 발급(제5호 서식)
 - 4. 교육비 납입 증명서

제13조(타 규정 적용)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학칙, 학사운영규정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칙(2020. 1. 20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0. 8. 6.)

제1조(시행일)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〈제1호 서식〉

특수대학원 수료자 무논문 석사 학위취득을 위한 신청서

1.	소	속 :	대학원

- 2. 학과(전공) :
- 3. 학 번:
- 4. 성 명:
- 5. 수료 일자 :

위 본인은 ㅇㅇ대학원 수료자로서 「부산대학교 학칙」, 「부산대학교 특수 대학원 수료자 무 논문 학위취득을 위한 지침」에 의거 추가 등록 및 학점취득 등을 통해 석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. . .

신 청 인 : (인)

확인자(전공주임): (인)

부산대학교 ○ ○ 대학원장 귀하

1	계		원장
결			
재			

첨부 : 특수대학원 성적증명서 1부

〈제2호 서식〉

20 . 학기 특수대학원 수료자의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자 명단

대학원명 :

일 련 번 호	학 과 (전 공)	학	번	성 명	수료일자	이수학기	취득학점	비고

상기와 같이 20 학년도 학기 특수대학원 석사과정 수료자의 무논문 석사학위 신청자 명단을 보고합니다.

20 . . .

부산대학교 ○ ○ 대학원장 (인)

부산대학교 총장 귀하

〈제3호 서식〉

등록포기서

-F)	지도교수	전공주임
확		
인		

소속: 학과 전공

학 번 : 성 명 :

상기 본인은 o o대학원 무논문 학위취득 이수중인 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등록포기를 신청합니다.

사 유(상세히 기록)

20 년 월 일

신 청 자 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 번 호 : () -

휴 대 전 화 :

부산대학교 ○○대학원장 귀하

〈제4호 서식〉

수 학 연 기 신 청 서

-F)	지도교수	전공주임
확		
인		

소 속 : 학과 전공

학 번 : 성 명 :

상기 본인은 o o대학원 무논문 학위취득 이수중인 자로서 아래와 같은 사유로 수학연기를 신청하고자 합니다.

사 유(상세히 기록)

20 년 월 일

신 청 자 : (서명 또는 인)

전 화 번 호 : () -

휴 대 전 화 :

부산대학교 ○○대학원장 귀하

〈제5호 서식〉

성 적 증 명 서

성 명 : 입 학 일 자

생년월일 : 수 료 일 자

학 번 : 학위수여일

성 별 :

소 속 :

교과 교과 교과목명 학점 성적 교과목명 학점 성적 구분 구분

> 석 사 (수 료) 과 정 년도 학기

석 사 (수 료 후) 과 정 년도 학기

취득학점 및 평점	석사(수료)과정	총취득학점 :	(전공필수:	전공선택:)	평점평균:	백분환산율:	석 차:	
	석사(수료후)과정		평점평균:	백분환산율:					
교과구분	* 석사(수료)과정	01:공통기초 02:공통기본	04:전공필수 0	5:전공선택 06:부전공	07:자유선택	09:보충과목	10:외국인공통 11:학-	부공동수강과목	20:전공
	* 석사(수료후)과정	01:공통기초 20:전공							

- 평점 A+ 4.5(100~95) A0 4.0(94~90) B+ 3.5(89~85) B0 3.0(84~80) C+ 2.5(79~75) C0 2.0(74~70) D+ 1.5(69~65) D0 1.0(64~60) F 0.0(60점미만) P, S:급제 F°,U :낙제 N:Non Pass
- * 위 교과목뒤에 표시된 영문자중 [C]는 중국어, [E]는 영어, [F]는 프랑스어, [G]는 독일어, [J]는 일본어, [R]은 러시아어로 강의함.
- * 국외교류대학 이수과목은 취득학점에는 포함하지만 평점평균 산출에는 포함되지 않음. * 보충과목은 수료학점에는 가산하지 아니함.

이 성적은 원부와 틀림없음을 증명함.

일 년 월

부 산 대 학 亚